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48
----------	-------

발의연월일 : 2026. 3. 25.

발 의 자 : 홍기원 · 윤후덕 · 장철민
이언주 · 소병훈 · 박민규
손명수 · 문진석 · 조계원
송옥주 · 박정현 · 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사기 해외 범죄단지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및 약취·유인죄 등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범죄단체 구성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그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그 범죄의 실행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범죄자를 조직적으로 은닉·도피하게 하거나 그 범죄수익을 수수·은닉한 자 등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의 실행에 실질적·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거나, 단체범죄의 실행을 조직적·계속적으로 지원하거나,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

나,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은닉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그 역할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대포통장 개설·관리 범행 등과 결합된 형태의 약취·유인죄와 관련하여서는, 폭행·협박·강요·체포·감금 외에도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사회통념상 현저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포통장 개설·관리와 같은 조직적 금융사기 범행과 결합된 인적 통제 구조를 포섭하고 해석상 논란을 줄이고 형벌 규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4조, 제288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집단”을 “집단(이하 이 조에서 “범죄단체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범죄단체등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의 실행에 실질적·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범죄단체등의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사람
2. 범죄단체등의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이하 이 조에서 “단체범죄”라 한다)의 실행을 조직적·계속적으로 지원한 사람
3.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
4.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은닉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그 역할이 경미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88조제1항 중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범죄행위예의 가담 강요,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또는”으로, “목적으로 사람을”을 “목적으로, 사람을”로, “유인한”을 “유인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도”를 “사람 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인하여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로 한다.

1.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하는 행위
2.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사람의 사회통념상 현저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4. 업무관계·고용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 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 으로 하는 단체 또는 <u>집단</u> 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한다. <u>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u> <u>다.</u>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① ----- ----- ----- <u>집단</u> <u>(이하 이 조에서 “범죄단체등”</u> <u>이라 한다)</u> ----- ----- ----- ----- <u>. <후단 삭</u> <u>제></u> ② <u>범죄단체등을 조직하거나</u> <u>그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u> <u>로 활동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u> <u>로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u> <u>단체범죄의 실행에 실질적·계</u> <u>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u> <u>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1. <u>범죄단체등의 구성원을 모집</u> <u>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사람</u> 2. <u>범죄단체등의 활동으로 행하</u> <u>여지는 범죄(이하 이 조에서</u>
<신 설>	

<신 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단체범죄”라 한다)의 실행을 조직적·계속적으로 지원한 사람

3.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

4.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수수·은닉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그 역할이 경미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

-----.

1.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하는 행위

2.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사람의 사회통념상 현저한 궁박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신 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4. 업무관계 · 고용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 ·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② 범죄행위에의 가담 강요,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또는-----목적으로, 사람을-----유인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
-----.

③ -----

-----사람 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인하여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